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5일. 평창군수(건설과장)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10월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박현창)

가. 제안이유

- 읍면에서 보관·대여중이던 양수기가 군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문중 “읍·면장”을 “군수”로 변경(안제3조, 제4조, 제7조, 제12조)
- 관리책임자가 양수장비대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조항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종합검토결과

- 가뭄대책을 목적으로 평창읍, 대화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2년말 부터 군창고에 일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리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자를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건설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구등에도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